

의안번호	제 25 호
의결연월일	

의결사항
------

사천시발전소주변지역주민복지지원사업및  
기업유치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출자	사천시장
제출연월일	2004. 6. 30

# 사천시발전소주변지역주민복지지원사업및 기업유치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5
----------	----

제출일자	2004. 6. 30
제 출 자	사 천 시 장

## 1. 의결주문

사천시발전소주변지역주민복지지원사업및기업유치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 2. 개정이유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상위법과 부합되게 개정하고, 기업유치지원금 용자대상사업자 중 전기사업법 관련 조항 적용을 바로잡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임.

## 3. 주요내용

- 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문 삭제(안 제2조제5호)
- 나. 주민복지지원사업 용자조건중 자구수정(안 제6조)
  - 1인당 → 1가구당
- 다. 법령인용 조항 정비(안 제4조)
  - 전기사업법 제17조 → 전기사업법 제16조

## 4. 주요토의과제 : 없음

## 5.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따로붙임
- 나. 예산 : 912백만원(2004년 당초예산)
- 다. 합의 : 해당없음
- 라. 기 타
  - 1) 신·구 조문 대비표 : 따로붙임
  - 2) 입법예고(2004. 5. 29 ~ 6. 18)결과 제출된 의견없음
  - 3) 규제심사 : 해당없음

사천시 조례 제 호

## 사천시발전소주변지역주민복지지원사업및 기업유치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사천시발전소주변지역주민복지지원사업및기업유치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목 “용어의 정의” 를 “정의”로 하고, 동조제5호를 삭제한다.

제4조제2호중 “제17조” 를 “제16조”로 한다.

제6조의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의 용자한도액란중 “1인당” 를 “1가구당”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안)						
<p>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생략)</p> <p>2.(생략)</p> <p>3.(생략)</p> <p>4.(생략)</p> <p><u>5.지원법시행령 제21조제4항의 주민복지지원사업 용자대상에 있어서 “1인당”이라 함은 1가구당 1인을 말한다.</u></p> <p>제4조(용자대상사업) 용자대상사업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p> <p>1.(생략)</p> <p>2.기업유치지원사업 : 전기사업법 <u>제17조</u>의 규정에 의한 산업용 전력을 공급받는 기업 또는 시장이 발전소 주변지역의 개발과 고용증대가 기대된다고 인정하는 기업</p> <p>제6조(용자한도 및 용자조건) 용자한도 및 용자조건은 다음과 같다.</p>	<p>제2조(정의) -----</p> <p>-----</p> <p>1.(현행과 같음)</p> <p>2.(현행과 같음)</p> <p>3.(현행과 같음)</p> <p>4.(현행과 같음)</p> <p>5.&lt;삭 제&gt;</p> <p>제4조(용자대상사업) -----</p> <p>-----</p> <p>1.(현행과 같음)</p> <p>2.-----</p> <p style="text-align: center;"><u>제16조</u>의 -----</p> <p>-----</p> <p>-----</p> <p>제6조(용자한도 및 용자조건) 용자한도 및 용자조건은 다음과 같다.</p>						
구 분	용자한도액	대출이자율	상환조건	구 분	용자한도액	대출이자율	상환조건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	1인당 500만원이내	연 3%	5년이내 (2년거치 3년 분할상환)	현행과 같음	1가구당 500만원이내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기업유치지원사업자금	기업당 2,000만원이내	연 3 %	5년이내 (2년거치 3년 분할상환)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 관계법령발취

###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21조 (주민복지지원사업) ①법 제10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민 복지지원사업은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발전소 또는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의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소득증대, 주거환경의 개선 기타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을 융자하는 것으로 한다.

②주민복지지원사업의 지원기간은 발전소 또는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의 건설준비기간부터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주민복지지원사업의 지원금은 발전소 또는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의 시설규모를 기준으로 한다.

④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사업의 혜택이 주민들에게 골고루 돌아가고 실질적인 복지지원이 될 수 있도록 대출한도액, 대출이자율의 상한선 및 상환기간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⑤주민복지지원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한다.

# 전 기 사 업 법

제16조 (전기의 공급약관) ①전기판매사업자는 전기요금 기타 공급조건에 관한 약관(이하 "기본공급약관"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전기판매사업자는 그 전기수요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기본공급약관에서 정한 것과 다른 요금 기타 공급조건을 정한 약관(이하 "선택공급약관"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전기사용자로 하여금 선택공급약관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기본공급약관에 같음하여 이를 선택하게 할 수 있다.

④전기판매사업자는 선택공급약관을 포함한 기본공급약관(이하 "공급약관"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전에 영업소 및 사업소 등에 이를 비치하고 전기사용자가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⑤전기판매사업자는 공급약관에 따라 전기를 공급하여야 한다.